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66호
- 나.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31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2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사항 중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 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서 ‘18세 이하인 자’ 와 ‘65세 이상인 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의 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청소년 및 노약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18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호가목)

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신설함 (안 제10조제1호가목, 안 제10조제2호가목)

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함 (안 제10조제2호나목)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임.

나. 시립체육시설의 운영현황

- 서울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과 위탁·대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총 1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시설별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음.
- 잠실 주경기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잠실 마이스 단지 사업개발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운영이 불가한 바, 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시립체육시설 현황〉

| 운영 형태 | 소관부서 | 시설명/위탁기관(기간) | | |
|-------|-----------|--------------|---------------------------------------|---|
| 직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잠실 | 올림픽주경기장 | |
| | | | 보조경기장 | |
| | | | 실내체육관 | |
| | | 목동 | 제1수영장 | |
| | | | 주경기장 | |
| | | 기타 | 야구장 | |
| 위탁·대행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잠실 야구장 | (주)LG스포츠(주)두산베어스 ('23.1.1~'25.12.31.) | |
| | | 목동빙상장 | (주)와이키키 신사점 ('23.1.1~'25.12.31.) | |
| | | 효창운동장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23.1.1~'25.12.31.) | |
| | 체육정책과 | 서울월드컵경기장 | 서울시설공단 ('19.1.1~'23.12.31) | |
| | | 장충체육관 | 서울시설공단 ('20.1.1~'24.12.31) | |
| | | 고척스카이돔 | 서울시설공단 ('21.1.1~'25.12.31) | |
| | 체육진흥과 | 산악문화체육센터 | (사)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 ('23.1.1~'25.12.31) | |
| | 기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잠실 제2수영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22.1.1.~'24.12.31.) ※ 무상 사용허가 |
| | | 체육정책과 | 창체동문체육센터 | 도봉구청(문화체육과) 위임관리 |

다. 시립체육시설의 감면사유 중복시 적용범위(안 제10조 관련)

- 안 제10조는 시립체육시설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 이는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두 개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하게 하는 중복적용을 방지하는 조치로 보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 | |
|--|--|
| <p>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u><후단 신설></u></p> | <p>1. -----. <u>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u></p> |
|--|--|

라. 명확한 연령 구분(안 제10조 관련)

- 현행 조례(제10조제1호가목)는 개인연습사용료 감면대상을 18세 이하 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의 경우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성인 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세 분화하여 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안 제7조제4항)>

| |
|--|
| <p>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성 인 : 19세 이상</p> <p>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p> <p>3. 어린이 : 12세 이하</p> |
|--|

- 이에 동 조례안은 기존에 18세 이하로만 분류하던 것을 18세 이하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한 바, 이용자 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가. <u>18세 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u> (이하 생략)</p> | <p>가. <u>18세 이하인 자(다만, 제7조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의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세 이상인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현행과 같음)</u></p> |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 감면 포함 (안 제10조 관련)

-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시립체육시설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에 가족 친화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을 수혜받는 타시도와 달리 출산 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혜택을 주고 있음.
-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평균출산율은 0.78명이자 서울은 0.59명(통계청 2022년 12월 인구동향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예산투입과 인식개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나 다둥이 가정의 생활체육 활동 진흥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의안번호
0460**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 제 안 자 | 제안일자 | 소관 상임위 |
|----------------------------------|--|---------------------------|---------------------------|
| <p>주요내용</p> | <p>서상열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p> | <p>2023. 2. 3.</p> | <p>문화체육관광위원회</p> |
| <p>추진경과</p> | <p>○ 2023. 2. 3. 서상열 의원 발의 - (찬성)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의원 등 31명</p> | | |
| <p>부서 검토의견</p> | <p>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p> | | |
| <p>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p> | <p>○ 체육시설 조례는 개인연습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경우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50%),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 감면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및 어르신의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다등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p> | | |
| <p>대응방안</p> | <p>○ 해당없음</p> | | |
| <p>담당부서</p> | <p>체육정책과</p> | <p>팀장 주소연(☎2133-2677)</p> | <p>담당 김병모(☎2133-2678)</p> |

붙임 2

시립체육시설 운영 수입현황

직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8)

| 구 분 | |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 잠 실 | 올림픽주경기장 | 120 | 42 | 12 | 3 |
| | 보조경기장 | 26 | 4,517 | 18,374 | 12,101 |
| | 실내체육관 | 18,546 | 6,688 | 21,385 | 31,486 |
| | 제1수영장 | 2,246,590 | 630,966 | 1,137,634 | 1,759,023 |
| 목 동 | 주경기장 | 1,689 | 1,258 | 1,634 | 5,901 |
| | 야구장 | - | - | - | - |
| 기 타 | 구의야구공원 | - | - | - | - |
| | 신월야구공원 | - | - | - | - |

위탁·대행 체육시설(7)

| 소관부서 | 시 설 명 |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잠실야구장 | - | - | - | - |
| | 목동빙상장 | 1,686,795 | 534,949 | 1,248,111 | 1,878,177 |
| | 효창운동장 | - | - | - | - |
| 체육정책과 | 서경올림픽경기장 | - | - | - | - |
| | 장충체육관 | - | - | - | - |
| | 고스카이천도 | 275,359 | 103,912 | 172,985 | 395,745 |
| 체육진흥과 | 산체악협문센화터 | - | - | 159,603 | 229,708 |

기타 체육시설(2)

| 소관부서 | 시 설 명 | 입장료(개인연습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단위:천원)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잠실제2수영장 | - | - | - | - |
| 체육정책과 | 창체동육문센화터 | 2,395,928 | 36,862 | 243,009 | 1,717,196 |

※ 빈칸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가 없음